

의안번호	2218326
의 퇴 인	안상훈 의원
회 답 일	2026. 6. 23.
추계번호	26C2035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40조 (시·도사회보장위원회)	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에 사회보장급여의 직권신청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소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0조 (시·도사회보장위원회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직권신청 여부를 심의·의결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경우 관련 수당 및 운영비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¹⁾에 해당하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해당 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1) 현행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규정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
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, ② 미성년자, ③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

- 개정안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²⁾ 하고 미리 그 직권신청 계획안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, 보고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이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직권신청 여부를 확정하도록 규정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에 신규로 설치될 소위원회의 규모와 회의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함
 - 안 제40조제10항은 소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설치될 소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2) 현행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규정된 대상자 외에 위기가구 구성원을 추가함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